

# 2025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재공고(3차연장)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10일

서귀포시장

## 1. 신청자격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 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 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임업후계자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
- 선별·가공·유통·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생산자단체

구분		지원 자격
임업인 등 * 개인에 한함	임업인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
	농업경영체 (임업경영체 포함)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*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
	임업후계자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
	독립가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한 독립가
	신지식농업인 (임업분야)	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 농업인(임업분야)
생산자단체	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### <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>
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

-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자 우선 선발  
(2024. 2월 수요조사실시)

## 2. 신청대상 내역사업

연번	사업명	지원규모	사업추진 기간	접수·문의처
1	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(소액사업)	44,776천원	'25. 9.~ 12월	공원녹지과 (760-3044)
2	임산물 생산기반조성	1,853천원	'25. 9.~ 12월	
3	임산물 유통기반조성	2,458천원	'25. 9.~ 12월	

○ 지원범위

-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**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50% 이상 확보하여야 함**
- ※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**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** 참고

**3. 신청 및 접수**

가. 신청기간: (기존) 2025. 8. 28.(목)~ 2025. 9. 10.(수) (09:00 ~ 18:00)

(연장) 2025. 8. 28.(목)~ 2025. 9. 19.(금) (09:00 ~ 18:00)

나. 신청방법: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방문신청

- 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
-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 신청 시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

다. 접수장소: 서귀포시 신중로 55, 서귀포시청 제2청사 별관 공원녹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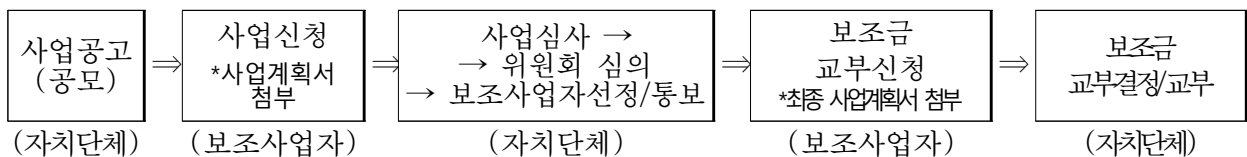
라. 신청서류: 보조금 지원신청서(견적서 포함), 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 각 1부.

- 제출한 서류에 대해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,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 **지원불가**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문의처: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☎ 064)760-3044

**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**
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- 심사기준: 사업의 적합성, 파급성,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, 신청예산의 타당성, 자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 실적 등
- 결과 통보: 개별 통보



**5. 지원제한**

-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변경,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**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,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**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
- \*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
- \*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

**6. 안내 및 상담**

-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: ☎ 064)760-3044

## < 유 의 사 항 >

### 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### 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### 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

### 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### 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공원복지과(☎064-760-30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[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]

- 운영시기 : 2016. 7. 1 부터
- 운영부서 : 청림혁신담당관실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림혁신담당관)
- 신고처 :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
- 포상금 지급 :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% 범위(최대 2억원)
- 문의사항 : 청림혁신담당관실(☎710-4623)

※ 구체적인 사항은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참조